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1년 05월 25일

나포면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강 *호	강 *호 1957-01-25	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	직권말소 2021-05-25
이 *아	이 *아 1984-01-04	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	직권말소 2021-05-25